# 양육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양육비 ]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양육비 이행의 확보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 콘텐츠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 1
1.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 4
1.1. 양육비 부담의무 ..... 4
1.1.1.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4
1.1.2.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6
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 10
2.1.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10
2.1.1.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과정을 지원합니다. ..... 10
2.2.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 11
2.2.1. 양육비 협의성립 및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2.2.2. 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2.2.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 19
2.2.4. 양육비 지급 이행, 법적 조치를 취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 22
2.3.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25
2.3.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25
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28
3.1.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 28
3.1.1.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8
3.1.2.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 29
3.1.3.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 30
3.1.4.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 31
3.1.5. 기동반이 직접 찾아가 양육비 이행을 촉구합니다. ..... 33

# 1.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 1.1. 양육비 부담의무

### 1.1.1.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

이 콘텐츠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아동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한부모가족』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경제적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콘텐츠의 < 영유아 보육 지원-양육수당-양육수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1쪽).

#### 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단서).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Q.**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A.**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및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또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 한편,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 1. 22.자 2016브30088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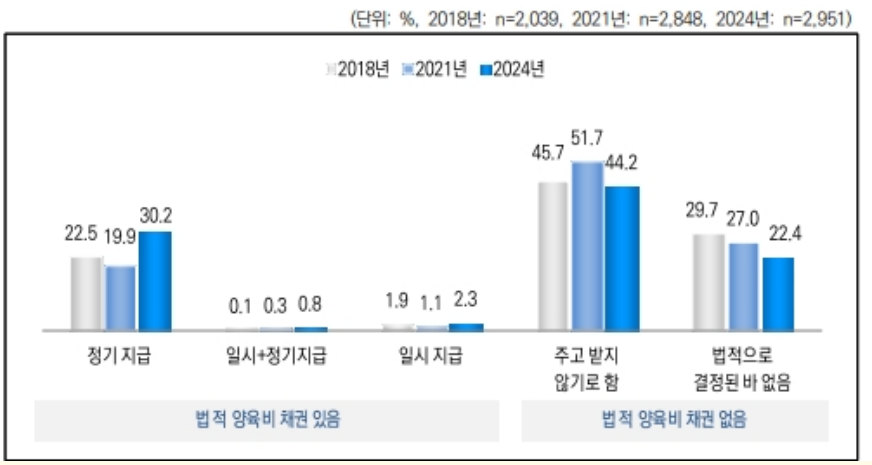
## 양육비 이행 실태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실태

▪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수준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1.1.5),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7호(2021. 1. 12. 일부개정, 2021. 7. 13. 시행)} 개정이유 참조].

▪ 자녀양육비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주고 받지 않기로 함 44.2%, 정기지급 30.2%, 법적으로 결정된바 없음 22.4% '일시지급 2.3%, 일시 + 정기지급 0.8%순으로 나타났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193쪽).

**※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 출처 : 성평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193쪽 >

### 1.1.2.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양육비 결정

#####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子)를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하며,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전단, 제860조 본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3항).

##### 협의가 어려운 경우 양육비의 청구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 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위의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4).

※ 법원은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해야 함(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해야 합니다.

### 양육비의 변경

▪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양육비 감액 시 고려해야 할 사항(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조)

-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해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나이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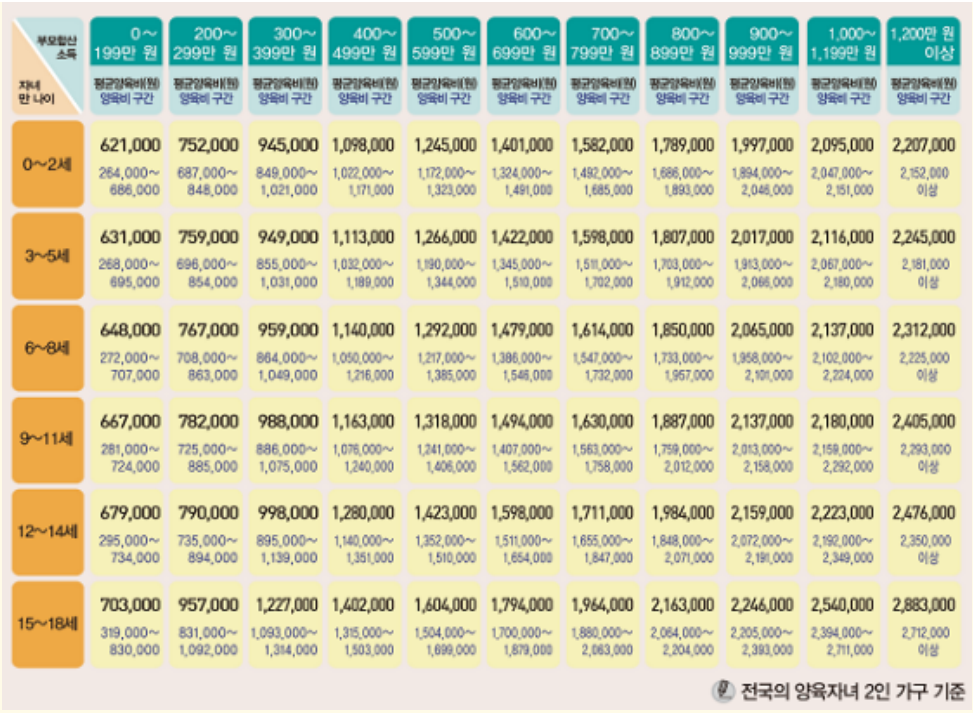
###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쪽)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 부모합산 소득 / 자녀 만 나이 | 0~199만 원 | 200~299만 원 | 300~399만 원 | 400~499만 원 | 500~599만 원 | 600~699만 원 | 700~799만 원 | 800~899만 원 | 900~999만 원 | 1,000~1,199만 원 | 1,200만 원 이상 |
|---|---|---|---|---|---|---|---|---|---|---|---|
|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
| 0~2세 | 621,000<br>264,000~686,000 | 752,000<br>687,000~848,000 | 945,000<br>849,000~1,021,000 | 1,098,000<br>1,022,000~1,171,000 | 1,245,000<br>1,172,000~1,323,000 | 1,401,000<br>1,324,000~1,491,000 | 1,582,000<br>1,492,000~1,685,000 | 1,789,000<br>1,686,000~1,893,000 | 1,997,000<br>1,894,000~2,046,000 | 2,095,000<br>2,047,000~2,151,000 | 2,207,000<br>2,152,000 이상 |
| 3~5세 | 631,000<br>268,000~695,000 | 759,000<br>696,000~854,000 | 949,000<br>855,000~1,031,000 | 1,113,000<br>1,032,000~1,189,000 | 1,266,000<br>1,190,000~1,344,000 | 1,422,000<br>1,345,000~1,510,000 | 1,598,000<br>1,511,000~1,702,000 | 1,807,000<br>1,703,000~1,912,000 | 2,017,000<br>1,913,000~2,066,000 | 2,116,000<br>2,067,000~2,180,000 | 2,245,000<br>2,181,000 이상 |
| 6~8세 | 648,000<br>272,000~707,000 | 767,000<br>708,000~863,000 | 959,000<br>864,000~1,049,000 | 1,140,000<br>1,050,000~1,216,000 | 1,292,000<br>1,217,000~1,385,000 | 1,479,000<br>1,386,000~1,546,000 | 1,614,000<br>1,547,000~1,732,000 | 1,850,000<br>1,733,000~1,957,000 | 2,065,000<br>1,958,000~2,101,000 | 2,137,000<br>2,102,000~2,224,000 | 2,312,000<br>2,225,000 이상 |
| 9~11세 | 667,000<br>281,000~724,000 | 782,000<br>725,000~885,000 | 988,000<br>886,000~1,075,000 | 1,163,000<br>1,076,000~1,240,000 | 1,318,000<br>1,241,000~1,406,000 | 1,494,000<br>1,407,000~1,562,000 | 1,630,000<br>1,563,000~1,758,000 | 1,887,000<br>1,759,000~2,012,000 | 2,137,000<br>2,013,000~2,158,000 | 2,180,000<br>2,159,000~2,292,000 | 2,405,000<br>2,293,000 이상 |
| 12~14세 | 679,000<br>295,000~734,000 | 790,000<br>735,000~894,000 | 998,000<br>895,000~1,139,000 | 1,280,000<br>1,140,000~1,351,000 | 1,423,000<br>1,352,000~1,510,000 | 1,598,000<br>1,511,000~1,654,000 | 1,711,000<br>1,655,000~1,847,000 | 1,984,000<br>1,848,000~2,071,000 | 2,159,000<br>2,072,000~2,191,000 | 2,223,000<br>2,192,000~2,349,000 | 2,476,000<br>2,350,000 이상 |
| 15~18세 | 703,000<br>319,000~830,000 | 957,000<br>831,000~1,092,000 | 1,227,000<br>1,093,000~1,314,000 | 1,402,000<br>1,315,000~1,503,000 | 1,604,000<br>1,504,000~1,699,000 | 1,794,000<br>1,700,000~1,879,000 | 1,964,000<br>1,880,000~2,063,000 | 2,163,000<br>2,064,000~2,204,000 | 2,246,000<br>2,205,000~2,393,000 | 2,540,000<br>2,394,000~2,711,000 | 2,883,000<br>2,712,000 이상 |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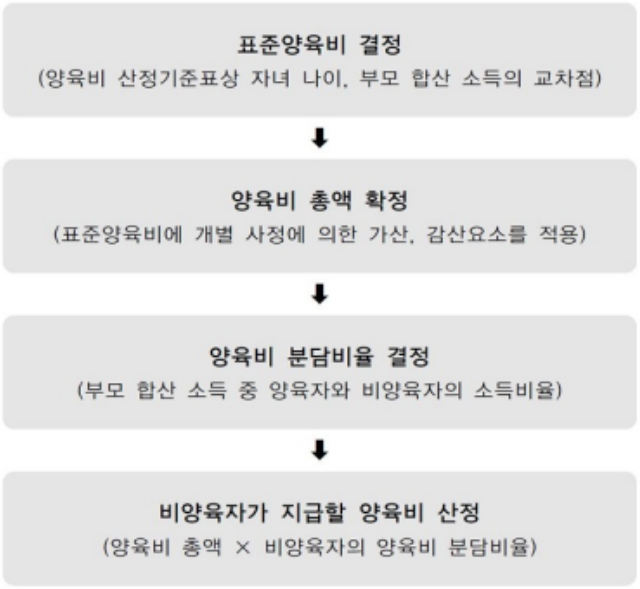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쪽 >

**양육비 산정절차 흐름도**




<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2쪽 >

※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 2.1.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2.1.1.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과정을 지원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할 국가 등의 책무**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 등**

▪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지원 대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 www.childsupport.or.kr >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 <출처 : 성평등가족부(www.mogef.go.kr)-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 참조 >

## 2.2.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 2.2.1. 양육비 협의성립 및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위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Q.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지원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 A.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협의 성립 지원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
> - 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 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합니다.
>
> -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 절차 없이 약식으로 당사자 간 양육비 액수, 지급방식 등 협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육비 청구 소송 후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양육비 액수 조정 등 양육비 부담조서(또는 결정서)의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자주 묻는 질문 > 참조

### 협의 성립 지원의 신청

▪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의 신청방법
>
> -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
>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협의 성립 지원의 방법 및 절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해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협의 성립 지원의 절차




출처 : 성평등가족부(www.mogef.go.kr), <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협의 성립 지원 >

## 면접교섭 지원

### 면접교섭의 지원

▪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민법」 제837조의2제3항).

###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

▪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

▪ 이행관리원의 장은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의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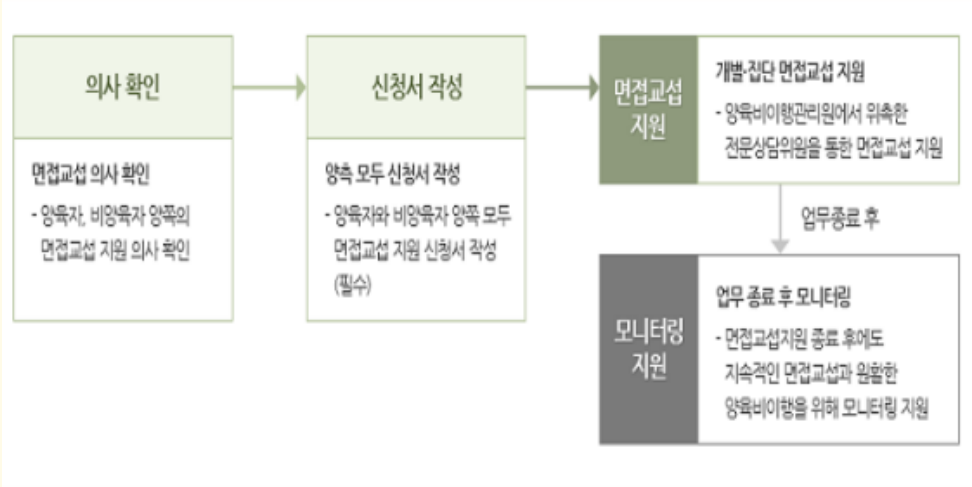
-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는지의 여부

#### 면접교섭 지원의 방법

▪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

-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면접교섭 지원의 절차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s://www.kihf.or.kr), < 주요사업-양육비이행지원사업-양육비이행지원 안내-양육비 모니터링 및 면접교섭 > 참조

### 2.2.2. 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내용

▪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참조).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인지 청구”는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출처 : 성평등가족부(www.mogef.go.kr)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이용안내 및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법률지원 >

### 법률지원의 신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 양육부·모등은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다음의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1.)

<table>
<tr><th colspan="2">법률지원의 종류</th><th>첨부해야 하는 서류</th></tr>
<tr><td colspan="2">인지 청구 소송</td><td>기본증명서〔신청인, 양육비이행지원대상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만한 사항(유전자감정서, 사진, 관계인 진술서 등)</td></tr>
<tr><td colspan="2">양육비(변경) 청구소송</td><td>기본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신청인), 소득증명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집행권원(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화해조서 등)</td></tr>
<tr><td rowspan="2"></td><td>이행명령,<br>담보제공명령</td><td>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br><집행권원 형태별 서류><br><table><tr><th>집행권원 형태</th><th>서류명</th></tr><tr><td>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td><td>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td></tr><tr><td>조정조서</td><td>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td></tr><tr><td>양육비부담조서</td><td>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td></tr><tr><td>공정증서</td><td>집행권원, 집행문</td></tr></table></td></tr>
<tr><td>감치명령,<br>과태료부과명령</td><td>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이행명령결정문,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td></tr>
</table>

<table>
<tr>
<td rowspan="2">이행확보 소송</td>
<td>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td>
<td>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br><집행권원 형태별 서류><br><table><tr><th>집행권원 형태</th><th>서류명</th></tr><tr><td>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td><td>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td></tr><tr><td>조정조서</td><td>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td></tr><tr><td>양육비부담조서</td><td>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td></tr><tr><td>공정증서</td><td>집행문</td></tr></table></td>
</tr>
<tr>
<td>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td>
<td>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br><집행권원 형태별 서류><br><table><tr><th>집행권원 형태</th><th>서류명</th></tr><tr><td>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td><td>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td></tr><tr><td>조정조서</td><td>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td></tr><tr><td>양육비부담조서</td><td>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td></tr><tr><td>공정증서</td><td>집행문</td></tr></table></td>
</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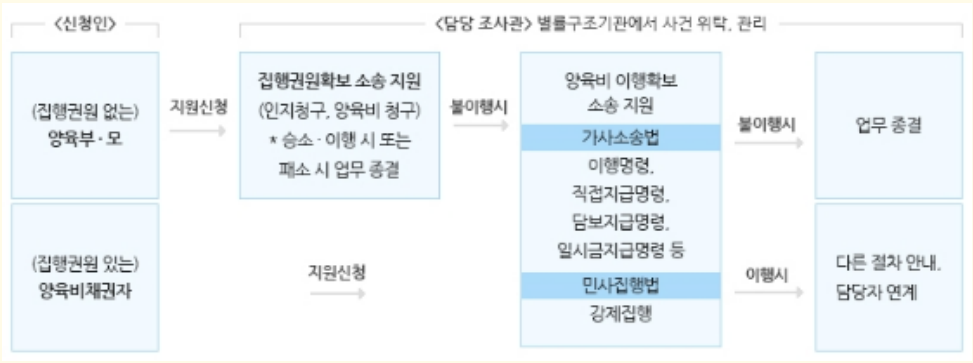
<table>
<tr>
<td>부동산 강제경매,<br>자동차 강제경매</td>
<td>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br>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집행권원 형태별 서류<br><집행권원 형태별 서류><br><table><tr><th>집행권원 형태</th><th>서류명</th></tr><tr><td>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td><td>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td></tr><tr><td>조정조서</td><td>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td></tr><tr><td>양육비부담조서</td><td>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td></tr><tr><td>공정증서</td><td>집행문</td></tr></table></td>
</tr>
</table>

###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勝訴)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법률지원의 절차




- <출처 : 성평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법률지원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

-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2.2.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지원

###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말함) 1부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

-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채권 추심지원의 절차




<출처 : 성평등가족부(www.mogef.go.kr)-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채권 추심지원 >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및 조사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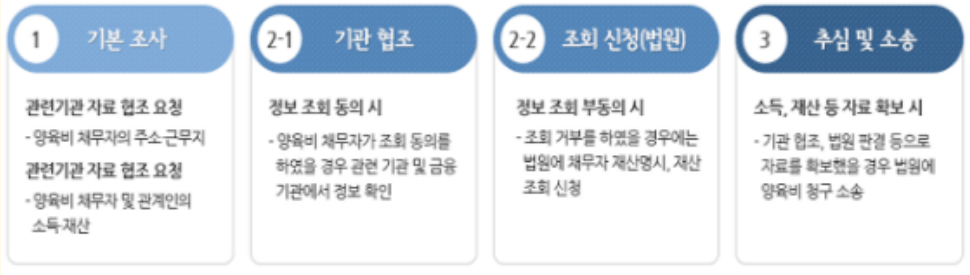
-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채무의 변제 방법
-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가상재산을 포함)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Q.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관계기관(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 (채무자 동의 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 관련 자료 요청

- 금융기관 등[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 (채무자 동의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 관계기관/금융기관 등 소득·재산조사 방식 : 채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관계기관, 금융기관 등에 일괄 발송하여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 파악

- 법원 : (채무자 동의 거부 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자주 묻는 질문 > 참조

※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사업안내-추심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양육비 지급 이행, 법적 조치를 취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4. 양육비 지급 이행, 법적 조치를 취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취소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help.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가사-양육비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help.scourt.go.kr)의 < 서류제출-가사서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4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2항).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

√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help.scourt.go.kr)의 < 서류제출-가사서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2항·제3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1항).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67조제1항).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help.scourt.go.kr)의 < 서류제출-가사서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

▹ "감치(監置)"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 위의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제68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제1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

▪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2조).

※ '이행명령 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help.scourt.go.kr)의 < 서류제출-가사서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및 제67조제1항).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제1호).

▹ 위의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제68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제1항).

### 2.3.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2.3.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선지급"이란?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선지급 안내 참조].

※ 양육비 선지급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선지급 안내>

###### 양육비 선지급 금액

▪ 양육비 선지급금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합니다(「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1.).

※ 다만,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양육비 채무 이행 주기가 "월"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 양육비 선지급 신청

▪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1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 √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신청인이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 및 3.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 신청 방법**
>
>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양육비 선지급 결정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또는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제1항).

▪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제2항).

##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등

###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사람(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1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2항).

▹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 선지급금 대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 취소에 따라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되거나 그 금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제1항 참조).

▹ 위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제2항 참조).

>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3.1.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 3.1.1.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감치

#### 과태료 부과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참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4조)

#### 감치(監置)명령 등

1.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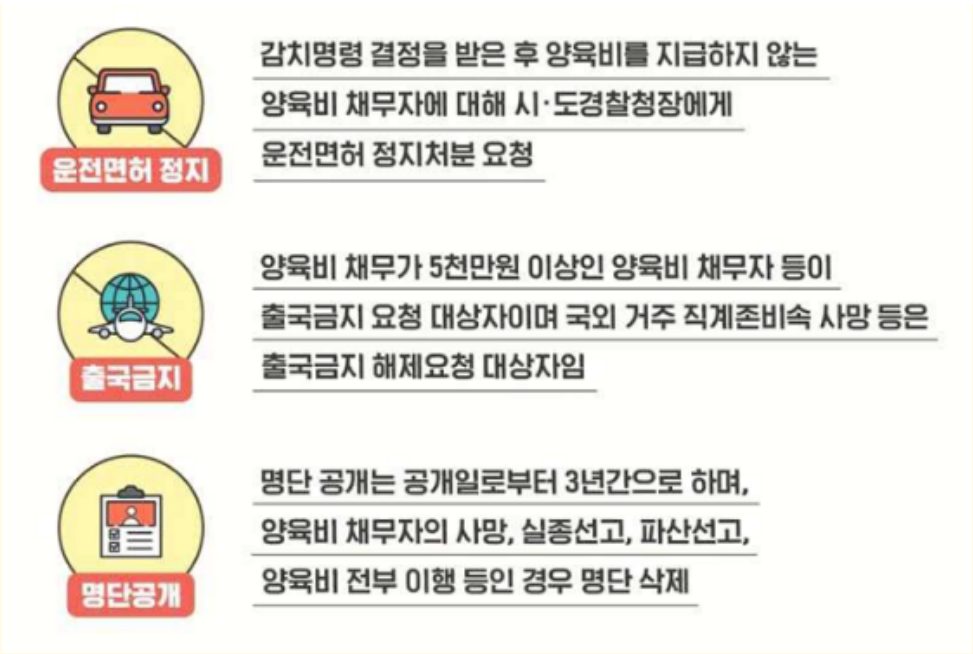
2.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 위의 1.이나 2.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본문).

> ※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2021. 7. 5.) 3쪽 >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정보 확인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에 관한 내용은 <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내용은 <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에서, '명단 공개'에 관한 내용은 <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1.2.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제재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참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요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 이하 같음)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본문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1.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함)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하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의 철회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 지방경찰청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

### 3.1.3.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 출국금지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 출국금지의 요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제3항).

1.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위의 1. 및 2.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법무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

#### 출국금지 사유 해소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3항).

####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1.4.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 양육비 불이행 명단의 공개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제재조치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참조).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 명단공개 대상 | 공개 정보 |
| --- | --- |
|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
| 이행명령 결정(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함)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
> ☞ < http://www.mogef.go.kr/msv/cseMain.do >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기간 등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함)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3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게시판 바로가기
>
> ☞ 성평등가족부(www.mogef.go.kr), < 정보공개-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

### 3.1.5. 기동반이 직접 찾아가 양육비 이행을 촉구합니다.

#### 양육비 이행을 위해 채무자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 "현장지원반"이란?

▪ "현장지원반"이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접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을 찾아가 채무자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기동반을 말합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요사업-양육비이행지원사업-양육비이행지원 안내-조사지원 및 제재조치-현장지원반).

▪ 양육비 고액 및 고질적 체납, 감치 미집행,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등의 경우에 활동하며, 이는 양육비 채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조성으로 이어집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조사정보지원).

##### 현장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현장 활동을 통한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고액·고질적 체납자, 감치 미집행 사례를 선별해 양육비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조사정보지원 >